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54호 2022. 7. 29(금)

선 람	기관의 장

고 시

- 남원시 고시 제2022-97호 도시계획(문화시설)사업 [남원예촌마당 조성사업(짚와이어도착지)]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1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2022-1615호 공시송달공고----- 4
- 남원시 공고 제2022-1624호 남원시 성과포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6

회 람																				
--------	--	--	--	--	--	--	--	--	--	--	--	--	--	--	--	--	--	--	--	--

남원시 고시 제2022-97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남원예촌마당 조성사업(짚와이어 도착지)]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남원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인 『남원예촌마당 조성사업(짚와이어 도착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남원시 도시과(☎063-620-64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남 원 시 장

2022년 7월 29

일

- 1.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 가. 명 칭 : 남원예촌마당 조성사업(짚와이어 도착지)
 - 나. 사업의 위치 및 규모
 - 사업의 위치 : 남원시 쌍교동 260번지 일원
 - 사업의 규모 : 721m²

구 분	조성계획면적(m ²) (기정)	조성계획면적(m ²) (변경)	증감(m ²)
총 계	721	721	-
짚 라 인	201	180	감21
주 차 장	209	140	감69
녹 지	216	306	증90
도 로	95	95	-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남원시장

나. 주 소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사업인가일로부터 ~ 2023년 12월 31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계획평면도 및 공사설계도서 : 실음생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붙임참조)

〈편입 토지 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비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계	-	-	-	2,030	721	-	-	
1	쌍교동	342	도	545	65	-	국(건설부)	
2	쌍교동	276	대	255	255	-	남원시	
3	쌍교동	296	도	89 7	7 7	남원읍죽항리○○○ 남원시 시청로 60	박○호 남원시	
4	쌍교동	297	대	122	122	군포시산본동1120 주몽아파트1003-○○○ 남원시 시청로 60	오○정 남원시	
5	쌍교동	298	도	36	36	남원읍천거리○○ 남원시 시청로 60	김○숙 남원시	
6	쌍교동	301	도	50	50	천거리 남원시 시청로 60	박○서 남원시	
7	쌍교동	334	도	3	3	남원읍천거리107 남원시 시청로 60	김택용달 남원시	
8	쌍교동	335	도	36	36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9	쌍교동	337	대	116	116	남원읍천거리○○○ 남원시 시청로 60	이○우 남원시	
10	쌍교동	338	대	7	7	남원읍천거리○○ 남원시 시청로 60	윤○호 남원시	
11	쌍교동	339	도	771	24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남원시 공고 제2022 - 161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라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말소처리를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7. 29. ~ 2022. 8. 16.(15일간)
2. 공고장소 : 남원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시송달 내용

처분의 제목	소유자 현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성 명	주 소		위 치	건축물현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말소일 : 2022.7.27.)	(주)엘지텔 레콤 대표이사 정장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20	건축물 부존재	남원시 사매면 대율리 151-4 외 1필지	주1 콘테이너박스 근린공공시설 18㎡

4. 기타사항

- 가.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나. 기타 문의사항은 남원시청 건축과 (☎063-620-659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7. 27.

남 원 시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22-1624호

「남원시 성과포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8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성과포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1. 제정이유**

열심히 일하는 성과 우수자에게 성과 수준에 맞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성과금을 지급하는 포상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급 대상 규정(안 제1조~안 제4조)
- 나. 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규정 (안 제5조~안 제6조)
- 다. 심사위원회 직무 및 회의 관련 사항 등 규정 (안 제7조~안 제11조)

3. 입법예고기간 : 2022. 7. 28. ~ 2022. 8. 17.(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2년 8월 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감사실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81), 이메일(sky6027@korea.kr),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감사실(☎063-620-69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남원시 성과포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 : 붙임

남원시 성과포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2. 7.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감 사 실 장

1. 제정이유

열심히 일하는 성과 우수자에게 성과 수준에 맞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성과금을 지급하는 포상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급 대상 규정(안 제1조~안 제4조)
- 나. 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규정 (안 제5조~안 제6조)
- 다. 심사위원회 직무 및 회의 관련 사항 등 규정 (안 제7조~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7. 28. ~ 2022. 8. 17.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붙임
 -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성과포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포상금 지급·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과 우수자”란 시정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과 부서를 말한다.
2. “성과포상금”이란 시정 각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되어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남원시 성과포상금 지급·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급대상) ① 성과포상금 지급 대상은 남원시 소속 공무원이나 부서(이하 “시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로 한다.

②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정 업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2. 중앙부처, 상급기관의 평가나 외부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3. 국·도비 확보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시책에 대한 자체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얻은 경우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성과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성과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1. 지방행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남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시정평가와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
4. 그 밖에 평가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을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과관리 담당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④ 위원장은 성과포상금 지급 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심사) 성과포상금의 심사와 지급·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수당) 심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실무심사평가단) 위원회의 성과포상금 지급 및 심의 등과 관련하여 실무적인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심사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시장은 채택된 제안자와 채택제안을 시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별표 2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를 “시장은 채택된 제안자 중 민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별표 2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하고, 제안이 채택된 공무원과 채택된 제안을 시행하는 공무원에게는 「남원시 성과포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남원시 성과포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재정수반요인

- 성과포상금 지급대상(제4조제2항)

1. 시정 업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2. 중앙부처, 상급기관의 평가나 외부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3. 국·도비 확보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성과가 크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관련조문

- 제2조제2호, 제4조제2항

2. 비용 추계결과

○ 비용추계의 전제

- 성과포상금 지급내역

○ 비용추계의 결과

- 연간 예산 계획 : 334,000천원 [※ 2022년도 전체 예산]

· 국·도비 확보분야 : 170,000천원

· 내부평가 분야 : 164,000천원

- 연도별 예산 추계

(단위:천원)

연	합계	2022	2023	2024	2025	2026
도						
총비용	1,670,000	334,000	334,000	334,000	334,000	334,000
국·도비 확보분야	850,000	170,000	170,000	170,000	170,000	170,000
내부평가분야	820,000	164,000	164,000	164,000	164,000	164,000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전액 시비 편성

4. 그 밖의 사항

○ 작 성 자 : 감사실장 이성근

